

2019년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 어바니엘 워드 더 스타일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공급대상주택

- 주택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 (2·5호선 충정로역 역세권)
- 공급호수 : 499호(공공임대주택 49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50호)
- 단 지 명 : 어바니엘 워드 더 스타일 충정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시공사 : 대보건설(주)
- 임대 운영사 : 롯데자산개발(주)
- 임대사업자
 - 공공임대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지원민간임대 : 민간임대사업자 (주)원석디앤씨

■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7조의 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6조,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만 19세이상 39세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는 모든 계층 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 라 함)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자동차 운행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사용)와 생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는 예외임

※ 기계식 주차장(Type1: W2,150 X H1,550 X L5,205, Type2: W2,150 X H1,850 X L5,205)의 한정된 유효높이로 일부 생업용 자동차는 주차가 불가할 수 있음

▶ 생업용자동차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 화물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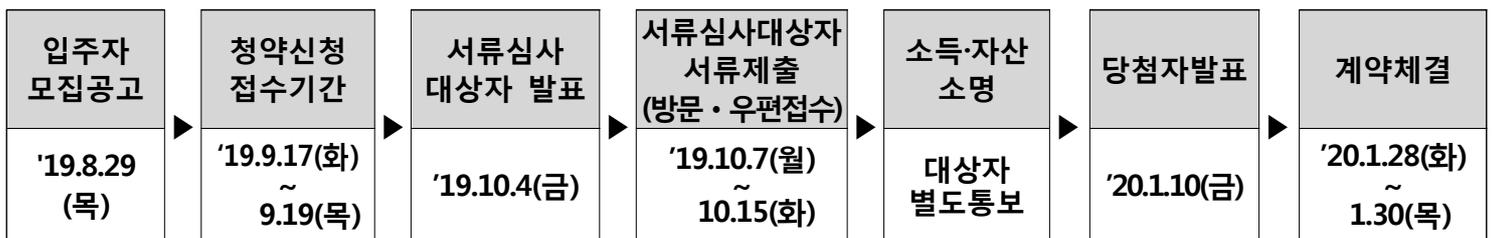
■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민 등의 자동차 이용 수요를 위하여 나눔카 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이 제공됩니다.

▶ 나눔카 사업

-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내 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제공 및 제공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이 제공됨
- 역세권 임대주택에 나눔카 전용 주차면을 확보하여 입주민 외 인근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

- 입주신청은 신청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사유로 신청하신 내용의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은 PC·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 신청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인터넷 접수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신청자에 한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함)에서 인터넷 접수대행을 하며, 공사에서의 접수대행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가정 등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계층은 6년, 신혼부부계층은 무자녀인 경우 6년, 1명이상 유자녀인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여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4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본 사업장은 2032.1.30.까지 분양 전환되지 않고 임대주택 사업장으로 유지됩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19. 8.29(목)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소득·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인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 ▶ 청약접수는 PC·스마트폰 인터넷(<https://www.i-sh.co.kr/app>) 또는 방문접수로 받습니다.
- ▶ 현장 여건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 인터넷 청약기간 : 2019. 9. 17.(화) 10:00 ~ 2019. 9. 19.(목) 17:00
- ▶ 방문 청약기간 : 2019. 9. 17.(화) 10:00 ~ 2019. 9. 19.(목) 17:00
- 방문 청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강당
- ▶ 소득·자산·주택 소명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1. 공급현황

※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3가 72-1 ‘어바니엘 워드 더 스타일 총정로’ 역세권청년주택은 신규공급단지로서 서울시 소유주택(49호) /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주택(450호)이 있는 단지임.

가. 공통사항

- 입주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서대문구 총정로3가 72-1 ‘어바니엘 워드 더 스타일 총정로’ 공공임대주택에는 신발장, 싱크대, 인덕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는 신발장, 싱크대, 인덕션이 빌트인 가구로 제공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의 공용면적에 벽체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기계실, 전기실, 창고/경비실, 관리실,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호 선정은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여 선정되므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 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도 불가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주택별, 계층별 해당 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당해 청년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년주택 위치는 공고문 약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에 일정액의 선수관리비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공급호수 및 면적

연번	구분	단지명 (주소)	공급 유형 (㎡)	공급 호수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세대 당 계약면적 (㎡)				입주 (예정)	공급 세대 최고 층수	난방 방식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총 계				499	-	499							
1	공공임대 주택	소계		49	-	49					2020.2.	26	개별 난방
		어바니엘 워드 더 스타일 총정로 (총정로3가 72-1)	16	13	-	13	16.06	11.09	14.30	41.45			
			17	17		17	17.66	12.10	15.73	45.49			
			35A	9		9	35.37	23.75	31.50	90.62			
			35B	10		10	35.85	23.25	31.92	91.02			
소계				450	-	450							
2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어바니엘 워드 더 스타일 총정로 (총정로3가 72-1)	15	23	-	23	15.81	10.92	14.08	40.81	2020.2.	26	개별 난방
			16	56		56	16.06	11.09	14.30	41.45			
			17	119		119	17.66	12.10	15.73	45.49			

면적	구분	단지명 (주소)	구 형 (㎡)	공 급 호 수	특 별 공 급	일 반 공 급	세대 당 계약면적 (㎡)				입주 (예정)	공 급 대 상 최 고 수	난방 방식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21	96		96	21.06	14.19	18.75	54.00			
			26	48		48	26.52	18.24	23.62	68.38			
			35A	7		7	35.37	23.75	31.50	90.62			
			35B	6		6	35.85	23.25	31.92	91.02			
			35C	23		23	35.86	23.87	31.93	91.66			
			36A	24		24	36.20	23.91	32.23	92.34			
			36B	24		24	36.20	23.91	32.23	92.34			
			39	24		24	39.83	26.27	35.47	101.57			

다. 공급대상 계층 및 임대조건

■ 공공임대주택(일반공급 : 49호)

신청 유형 (㎡)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조건				전 환 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신청자격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계	특별	일반	계	계약금 (20%)	잔금 (80%)				
16	대학생 계층	13		13	16,560	3,312	13,248	70,000	(+)	23,560	35,000
									(-)	8,280	97,600
17	청년 계층	17		17	19,120	3,824	15,296	80,000	(+)	27,120	40,000
									(-)	9,560	111,800
35A	신혼부부 계층	9		9	40,360	8,072	32,288	160,000	(+)	56,360	80,000
									(-)	20,180	227,200
35B	신혼부부 계층	10		10	40,920	8,184	32,736	160,000	(+)	56,920	80,000
									(-)	20,460	228,200

-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상이하며, 공급형별 중 16형은 대학생 계층, 17형은 청년 계층, 35A형, 35B형은 신혼부부 계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규모에서 신청이 미달된 계층이 있을 경우 남은 물량은 다른 계층 등의 모집 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전환 가능하고 전환율은 4.0%이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대료의 50%까지 전환 가능하고 전환율은 6.0%입니다.

니다.

- 당첨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우리 공사와 최초 계약체결 후, 임대조건 변경(임대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은 계약 후 우리 공사 관할 센터(은평서대문중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 450호)

신청 유형 (㎡)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청자격	공급 호수 여립 단지	임대보증금 비율 30%				임대보증금 비율 35%				임대보증금 비율 40%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계	계약금 (20%)	잔금 (80%)		계	계약금 (20%)	잔금 (80%)		계	계약금 (20%)	잔금 (80%)	
15 (원룸형)	청년계층	23	36,400	7,280	29,120	340,000	42,400	8,480	33,920	310,000	48,500	9,700	38,800	290,000
16 (원룸형)	청년계층	56	36,500	7,300	29,200	340,000	42,600	8,520	34,080	310,000	48,700	9,740	38,960	290,000
17 (원룸형)	청년계층	119	39,900	7,980	31,920	370,000	46,500	9,300	37,200	340,000	53,100	10,620	42,480	320,000
21 (원룸형)	청년계층	96	46,950	9,390	37,560	430,000	54,780	10,956	43,824	400,000	62,600	12,520	50,080	370,000
26	신혼부부 계층	48	59,140	11,828	47,312	540,000	69,000	13,800	55,200	500,000	78,860	15,772	63,088	470,000
35A	신혼부부 계층	7	75,500	15,100	60,400	700,000	88,300	17,660	70,640	650,000	100,900	20,180	80,720	600,000
35B	신혼부부 계층	6	76,500	15,300	61,200	710,000	89,600	17,920	71,680	660,000	102,300	20,460	81,840	610,000
35C	신혼부부 계층	23	76,500	15,300	61,200	710,000	89,250	17,850	71,400	650,000	102,000	20,400	81,600	600,000
36A	신혼부부 계층	24	77,200	15,440	61,760	710,000	89,800	17,960	71,840	660,000	102,600	20,520	82,080	610,000
36B	신혼부부 계층	24	77,200	15,440	61,760	710,000	89,800	17,960	71,840	660,000	102,600	20,520	82,080	610,000
39	신혼부부 계층	24	85,000	17,000	68,000	780,000	98,800	19,760	79,040	720,000	112,800	22,560	90,240	660,000

-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상이하며, 공급형별 중 15형, 16형, 17형 및 21형은 청년 계층, 26형, 35A형, 35B형, 35C형, 36A형, 36B형 및 39형은 신혼부부 계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규모에서 신청이 미달된 계층이 있을 경우 남은 물량은 다른 계층 등의 모집 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거 임대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에 임대료 변동율,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에 증액이 있을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상기 3가지 유형(30%, 35%, 40%)에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에 따라 상이, 1년 또는 2년)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임대보증금의 80%를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초계약 및 재계약(갱신)은 임대 운영사와 체결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가.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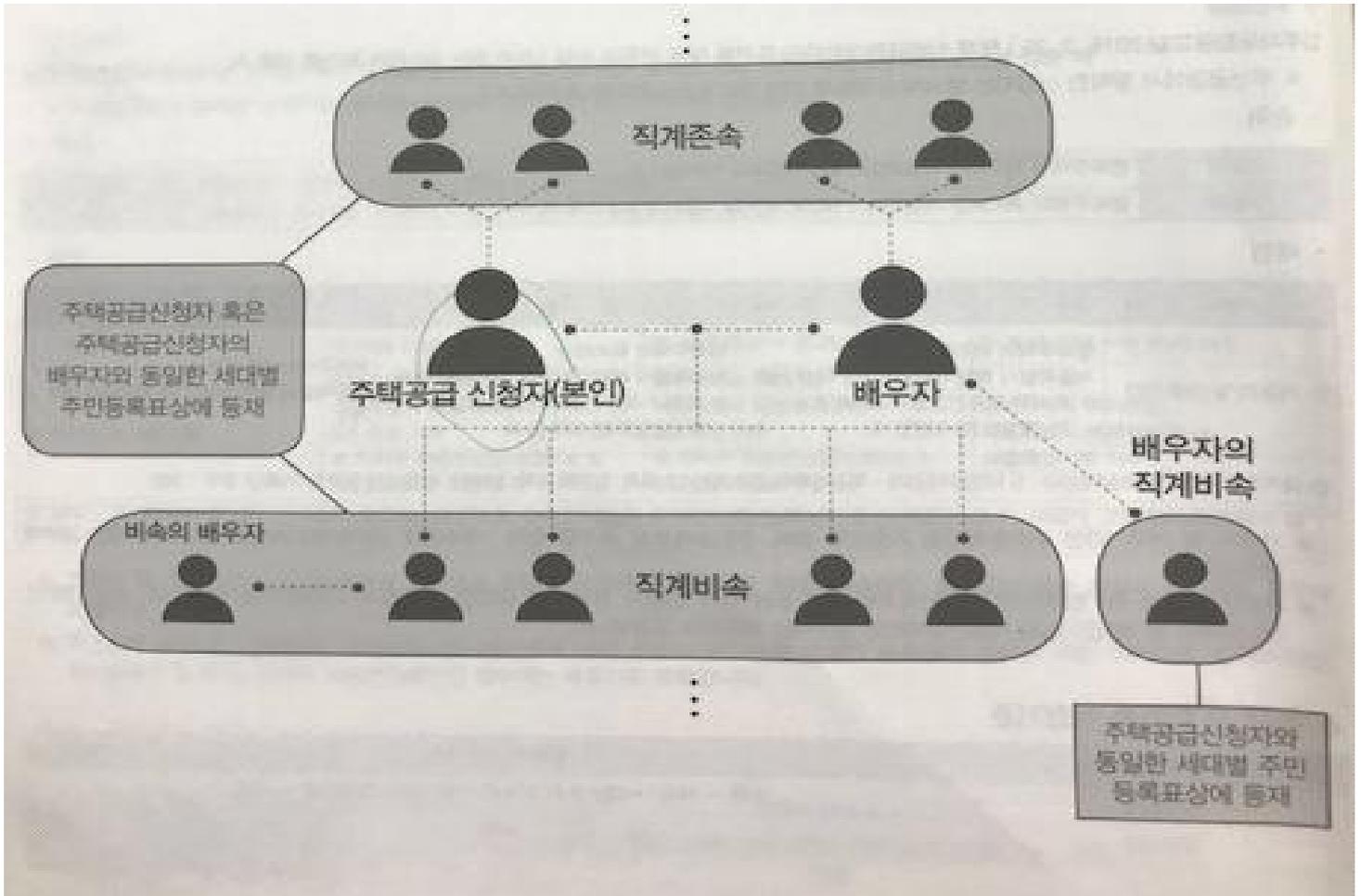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 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8.29) 현재 만19세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보유기준(자동차 미소유, 미운행)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다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p style="text-align: center;">무주택세대구성원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도 포함합니다.(단, 공고일 기준으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만 포함)</p>

-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의 신청자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대학생계층·청년계층 및 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하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 1인 또는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혼부부(본인 및 배우자) 및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 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는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는 연령이 아니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또한 산정시점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 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주자 선정방법

■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대학생,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계층별 소득순위를 우선 적용하고 지역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인 경우 전산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세부기준은 ‘다. 계층별 신청자격 공공임대주택 세부기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일반공급은 청년(대학생 포함) 및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순위 없이 전산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세부기준은 ‘다. 계층별 신청자격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세부기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층별 신청자격

■ 공공임대주택

- 대학생 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8.29) 현재 아래의 기본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㉔와 ②~④),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자동차 미소유, 미운행)을 모두 갖춘 자

구 분	기본요건 및 소득(자산) 보유 기준									
기본 요건	①-㉓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인자,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인자,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인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될 것									
	①-㉔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출생기준일 1979. 8. 30. ~ 2000. 8. 29)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무주택자일 것									
소 득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th> <th rowspan="2">소득산정기준</th> </tr> <tr> <th>가구원수</th> <th>100%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3인이하</td> <td>5,401,814원 이하</td> <td rowspan="2">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 부모를 기준으로 적용함 ◦ 신청자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3인이하)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신청자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의미 </td> </tr> </tbody> </table>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소득산정기준	가구원수	100% 이하	3인이하	5,401,814원 이하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 부모를 기준으로 적용함 ◦ 신청자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3인이하)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신청자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의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소득산정기준							
가구원수	100% 이하									
3인이하	5,401,814원 이하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 부모를 기준으로 적용함 ◦ 신청자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3인이하)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신청자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의미								
총 자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 : 7,500만원 이하									
자동차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포함하여 자동차 미소유 및 미운행(임차운행 포함)자 일 것 ※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사용)와 생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는 예외임 ※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입주 전·후 자동차를 소유, 임차 운행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①-가

- ※ '대학' 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합니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합니다.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고 퇴거조치 됩니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고 퇴거조치 됩니다.
- 대학교 졸업 유예자는 ①-가에 해당하므로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격 처리됩니다.

①-나

- '고등학교' 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동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인정 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 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무주택자' 란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공공임대주택

- 청년 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8.29) 현재 아래의 기본요건,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자동차 미소유, 미운행)을 모두 갖춘 자

구 분	기본요건 및 소득(자산) 보유 기준			
기본요건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출생기준일 1979. 8. 30. ~ 2000. 8. 29)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무주택자일 것			
소 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소득산정기준	
	가구원수	100% 이하	70% 이하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일 것 ◦ 해당세대(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본인의 월 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인이하	5,401,814원 이하	3,781,270원 이하	
총자산	※ 4인이상 가구원 소득기준은 ◆ 소득기준(p17) 참조 ※ 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소득을 산정			
총자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 가액 합산 : <u>23,200만원 이하</u>			
자동차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포함하여 자동차 미소유 및 미운행(임차운행 포함)자 일 것 ※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사용)와 생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는 예외임 ※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입주 전·후 자동차를 소유, 임차 운행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 ※ ‘무주택자’란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단, 당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동안에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 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8.29) 현재 아래의 기본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④, 예비신혼부부는 ①-㉔와 ②,④,⑤),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자동차 미소유, 미운행)을 모두 갖춘 자

구 분	기본요건 및 소득(자산) 보유 기준								
기본 요건	①-㉓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①-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출생기준일 1979. 8. 30. ~ 2000. 8. 29) ③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④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것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th> <th rowspan="2">소득산정기준</th> </tr> <tr> <th>가구원수</th> <th>100%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人以下</td> <td style="text-align: center;">5,401,814원 이하</td> <td rowspan="2">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3人以下)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td> </tr> </tbody> </table>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소득산정기준	가구원수	100% 이하	3人以下	5,401,814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소득산정기준							
가구원수	100% 이하								
3人以下	5,401,814원 이하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3人以下)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4인이상 가구원 소득기준은 ◆ 소득기준(p17) 참조									
총자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 가액 합산 : <u>28,000만원 이하</u>								
자동차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포함하여 자동차 미소유 및 미운행(임차운행 포함)자 일 것 ※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사용)와 생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는 예외임 ※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입주 전·후 자동차를 소유, 임차 운행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①-㉓

- ※ 신혼부부 계층 신청 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신혼부부 계층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외국인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에도 신청 불가)

①-㉔

※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계약은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입주신청 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가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명단(세대주와의 관계포함)이 추후 입주 시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포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또는 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1명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대표신청자(계약자)는 위 입주자격 연령에 해당하여야 하나,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입주자격 연령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③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인 자만 신청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2,55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이 2,556일 이상일 경우 신청자격 미충족으로 결격처리 됩니다.

④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⑤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 청년(대학생 포함)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8.29) 현재 아래의 기본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구 분	기본요건 및 소득(자산) 보유 기준
기본요건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출생기준일 1979. 8. 30. ~ 2000. 8. 29)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무주택자일 것
소 득	소득 기준 없음
총자산	자산 기준 없음
자동차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포함하여 자동차 미소유 및 미운행(임차운행 포함)자 일 것 ※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사용)와 생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는 예외임 ※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입주 전·후 자동차를 소유, 임차 운행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 ‘무주택자’란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단, 당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동안에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 신혼부부 계층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㉔와 ②~④, 예비신혼부부는 ①-㉔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구 분	기본요건 및 소득(자산) 보유 기준
기본 요건	①-㉓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①-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출생기준일 1979. 8. 30. ~ 2000. 8. 29) ③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④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무주택자)일 것
소 득	소득 기준 없음
총자산	자산 기준 없음
자동차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포함하여 자동차 미소유 및 미운행(임차운행 포함)자 일 것 ※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사용)와 생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는 예외임 ※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입주 전·후 자동차를 소유, 임차 운행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 ※ ①-㉓
- 신혼부부 계층 신청 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 거소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신혼부부 계층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외국인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에도 신청 불가)
- ※ ①-㉔
-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계약은 무효 처리합니다. 또한, 입주신청 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가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명단(세대주와의 관계포함)이 추후 입주 시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포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또는 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1명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대표신청자(계약자)는 위 입주자격 연령에 해당하여야 하나,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입주자격 연령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③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인 자만 신청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2,55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이 2,556일 이상일 경우 신청자격 미충족으로 결격처리 됩니다.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3. 입주자 선정

가. 공공임대주택

지원자격별	입 주 자 선 정 순 위				
대학생 계층 (소득순위 → 지역순위→추첨)	① 신청자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순위	소득기준	가구원(3인이하)		
	1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2,700,907원 이하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3,781,270원 이하		
	3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5,401,814원 이하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지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 2순위 :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지역에 •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 대학생 •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③ 위 ①, ② 기준 적용 후에도 동일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총자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다항 계층별 신청자격 ■ 공공임대주택 대학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청년 계층 (소득순위 → 지역순위→추첨)	①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청년 4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청년5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청년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순위	소득기준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청년 40%)	2,700,907원 이하 (2,160,725원 이하)	3,082,601원 이하 (2,466,080원 이하)	3,349,933원 이하 (2,679,946원 이하)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청년 50%)	3,781,270원 이하 (2,700,907원 이하)	4,315,641원 이하 (3,082,601원 이하)	4,689,906원 이하 (3,349,933원 이하)
	3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청년 70%)	5,401,814원 이하 (3,781,270원 이하)	6,165,202원 이하 (4,315,641원 이하)	6,699,865원 이하 (4,689,906원 이하)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지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 2순위 :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지역에 •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청년				

	<p>③ 위 ①, ② 기준 적용 후에도 동일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천</p> <p>※ ‘소득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장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합니다.</p> <p>※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p> <p>※ 소득, 총자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다항 계층별 신청자격 ■ 공공임대주택 청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신혼부부 계층 (소득순위 → 지역순위→추첨)</p>	<p>① 해당세대(신청자 및 세대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p> <table border="1" data-bbox="550 566 1540 862"> <thead> <tr> <th rowspan="2">순위</th> <th rowspan="2">소득기준</th> <th colspan="3">가구원수</th> </tr> <tr> <th>3인이하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td> <td>2,700,907원 이하</td> <td>3,082,601원 이하</td> <td>3,349,933원 이하</td> </tr> <tr> <td>2순위</td> <td>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td> <td>3,781,270원 이하</td> <td>4,315,641원 이하</td> <td>4,689,906원 이하</td> </tr> <tr> <td>3순위</td> <td>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td> <td>5,401,814원 이하</td> <td>6,165,202원 이하</td> <td>6,699,865원 이하</td> </tr> </tbody> </table> <p>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지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 2순위 :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지역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신혼부부 <p>③ 위 ①, ② 기준 적용 후에도 동일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천</p> <p>※ ‘소득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장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합니다.</p> <p>※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p> <p>※ 소득, 총자산, 자동차의 자격기준은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다항 계층별 신청자격 ■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p>	순위	소득기준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2,700,907원 이하	3,082,601원 이하	3,349,933원 이하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3,781,270원 이하	4,315,641원 이하	4,689,906원 이하	3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5,401,814원 이하	6,165,202원 이하	6,699,865원 이하
순위	소득기준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2,700,907원 이하	3,082,601원 이하	3,349,933원 이하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3,781,270원 이하	4,315,641원 이하	4,689,906원 이하																				
3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5,401,814원 이하	6,165,202원 이하	6,699,865원 이하																				

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지원자격별	입 주 자 선 정 순 위
<p style="text-align: center;">청년/ 신혼부부 계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지역요건 없음 ○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추첨 <p>※ 자동차 미소유 및 미운행</p>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공공지원민간임대(일반공급) 제외]

입주자 선정 순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 ① 소득순위 1순위자 가운데 지역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하고, 선정 조건이 동일한 경우 추첨
- ② 미달 시 소득순위 2순위자 가운데 지역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하고, 선정 조건이 동일한 경우 추첨
- ③ 미달 시 소득순위 3순위자 가운데 지역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하고, 선정 조건이 동일한 경우 추첨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 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 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의 범위 :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2.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 주택의 소유 기준일 :
 - 주택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소명방법: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민원회신문(공문)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서류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되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인 경우

◆ 소득산정기준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구분	소득기준					
소 득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공급유형	구분	3인이하	4인	5인	
	공공임대	청년 계층 (본인)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40%	2,160,725원 이하	2,466,080원 이하	2,679,946원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2,700,907원 이하	3,082,601원 이하	3,349,933원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781,270원 이하	4,315,641원 이하	4,689,906원 이하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5,401,814원 이하	6,165,202원 이하	6,699,865원 이하
		청년 계층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포함)				
	* 6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49,026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입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공공임대) 대학생 계층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만 해당됩니다.(이혼한 부모의 경우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						
* (공공임대) 청년 계층은 본인의 월평균소득 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를 충족해야 하며,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						
* (공공임대)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은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10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 부동산,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 공공임대주택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자산 기준 7,500만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3,200만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계층 총자산 기준 28,000만원 이하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받은 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구분		자산 기준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을 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며, 단, 아래 토지는 제외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5. 신청접수 일정

■ 청약신청 접수 세부일정 및 장소 : 2019. 9.17(화) ~ 9. 19(목) 10:00 ~ 17:00

대상자	접수일정	인터넷 청약 및 방문 청약장소
○ 공공임대주택 소득 1,2,3순위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2019.9.17(화) ~ 9.19(목) 10:00~17:00	인터넷청약 :www.i-sh.co.kr/ app 방문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강당,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 청년(대학생 포함) - 신혼부부		

- 청약접수는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사 방문(인터넷) 접수 시 장시간 대기할 수 있으니 가정 등에서 인터넷 청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인터넷 접수는 위 접수일정에 표시된 시간에만 운영하며,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 접수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인터넷 청약 접수는 2019.9.17.(화)~ 2019.9.19(목) (10:00~17:00)에만 운영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접수 첫날 오전은 인터넷 접수 폭주로 청약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인터넷 청약은 최종 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청약할 수 있으니 반드시 동 시간 이전에 청약완료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접수 안내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또는 소득활동 소재지 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사항으로 인정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입주자격 검증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자동차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자동차, 자산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9.5.9)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신청

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니,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란에 서명하셔서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안내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최종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 신청가능"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내용이 다른 경우 [자격요건(해당신청자격, 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유무, 현 주소지 최종전입일등) 서류심사시 신청자격 결격처리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해 주십시오.)

→ 본인 착오로 인해 기입한 내역은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불가)

○ 인터넷 신청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개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개인 공인인증서 발급 및 소지

-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로그인(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단지선택) → 3단계(신청자격확인) → 4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5단계(추가사항 입력) → 6단계(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 신청시간

- 신청기간은 2019. 9. 17.(화) 10:00 ~ 9. 19.(목) 17:00이며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십시오.

※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합니다.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본인이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에 제대로 신청하셨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해당자가 착오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일반)으로 신청할 시 절대 변경 불가이며, 신청기간 내일 경우 취소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방문인터넷 신청 안내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3~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설치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강당

○ 신청기간 : 순위별 청약기간 및 방문인터넷 창구 운영시간 참조

○ 청약방법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은 공급신청 위임장을 작성(청약을 위임)할 경우 공사 직원이 인터넷청약을 대행(이 경우 청약에 장시간 소요예상)할 예정임

※ 청약위임시 제출서류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 신청시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 인감도장(신청인) 본인(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방문신청시 반드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현주소지 최종전입일(주민등록등본 확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로명주소 등의 사항을 반드시 사전 숙지 후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

- 신청자가 청약신청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상위 300%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하단의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19. 8.29)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기존 발급분 제출가능)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단,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23456-1***** (X)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셨더라도 해당기간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 제출기간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 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19.10.4(금) 14: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에서 오른쪽 하단 “예비입주고객” =>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대상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 (1600-3456) 전화 => # => ①번 입력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게시판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19.10. 7(월) ~ 2019.10 .15(화)**

(방문접수는 평일 9:00~17:00, 점심시간은 12:00~13:00)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2019. 10.15(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기타 택배이용, 일반우편 제출 금지)

■ **심사서류 제출주소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청신호주택부 역세권 청년주택 담당자**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19.8.29.)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① 공통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공통 제출 서류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에도 제출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 · 신혼부부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1부
	역세권 청년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시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는 심사서류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류심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단,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에 산정되는 추가 세대구성원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만 추가 세대구성원도 서명(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는 미포함)] * 예비신혼부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심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단, 이 경우에도 정자 서명 자체는 아이의 이름으로 할 것) · 동의방법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이 서명(한글정자 서명) 또는 날인 (단, 금융정보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제출 가능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태아포함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이 동일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1통
	장애인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사용)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장애인 증명서 제출	1통
	생업용 자동차 / 이륜자동차 (125cc미만) 증빙 서류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업용 자동차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생업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득 활동 등에 참여하는 증빙 서류 제출(생업용 자동차의 정의는 1페이지 참고) · 이륜자동차(125cc미만)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제출 	1통

□ 기타 서류 ※ 방문 서류제출시(방문제출 대상: 등기우편으로 제출이 어려운 신청자 등)

·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그 외의 자 신청 시[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공급대상자별 개별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 생 계 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대학교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취업 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학교
	해당자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이혼사실확인을 위함)	주민센터
청년 계 층	청년	· '소득업무 근거지'가 공공임대주택 지역순위 1·2·3순위에 해당하는 자 : 아래 '해당자' 제출서류 확인	
	해당자	· 거주지가 아닌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가 공공임대주택 지역순위 1·2·3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불가시 법인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 등) · 위의 해당하는 자 중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그 외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와 실제 근무소재지가 다른 경우 :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실제근무지 표시된 경우 인정)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경우 - 병적증명서(군경력 기재하여 발급)	해당직장 국세청 해당직장 (해당 세무서) 병무청
신 혼 부 부 계 층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예비 신혼부부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대표신청자가 공고일 기준 미혼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역세권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홈페이지 게시된 공사 양식) 제출 ·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표신청자에게 위임), 신청자 각각(본인 및 예비배우자)의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동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동일하게 서명하여 제출) [입주시 제출] ·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주민등록표 제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 공공임대주택 : 서울주택도시공사 은평서대문중로센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롯데자산개발(주)	주민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해당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거주지가 아닌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가 공공임대주택 지역순위 1·2·3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불가시 법인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 등) · 위의 해당하는 자 중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해당직장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그 외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와 실제 근무소재지가 다른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실제근무지 표시된 경우 인정) 	국세청 해당직장 (해당 세무서)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p>토지, 건축물 및 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 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기타 자산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 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본인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상가 등을 소유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주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일 경우 - 본인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 상가 등의 임차인으로 전·월세를 내는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해당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8.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후 미입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이때 예비자 공급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2개월로 2021. 1. 9. 까지입니다.)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20. 1. 10.(금) 14:00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ARS(1600-34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공사(공공임대주택), 민간사업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9. 계약 및 구비서류

- 계약일시 : 2020.1.28(화) ~ 2020.1.30(목) 10:00~17:00(단, 점심시간 12:00~13:00)

※ 민간임대주택의 계약의 경우 계약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장소

구분	계약장소	계약 관련 문의처
공공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신호주택부 1층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개포동 14-5)] ※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상담가능시간 : 09:00~18:00(월~금) (점심시간 12:00~13:00 상담제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번지 2층 ※ 자세한 장소는 별도 안내 예정	롯데자산개발(주) 02-2653-2800

※ 정확한 장소 및 방법은 계약안내문 발송 시 확정통보

■ 구비서류

- 계약체결은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을 대리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구분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③ 계약금납부영수증
대리인이 신청할 때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① 인감증명서(신청인 발급분), 위임장(신청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도장(신청인) ② 본인(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계약금납부영수증

※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됩니다.

※ 소득·자산 초과 및 주택소유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소명이 완료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10.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기간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여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4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장은 2032.1.30.까지 분양 전환되지 않고 임대주택 사업장으로 유지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공공임대주택</td>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td> <td>청년(대학생 포함), 신혼부부계층</td> <td>4년</td> </tr> </tbody> </table>	구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공공임대주택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대학생 포함), 신혼부부계층	4년
	구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공공임대주택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대학생 포함), 신혼부부계층	4년										
	<p>■ 재계약 시 계층변경[공공임대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아울러,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후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어 계층 변경절차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재계약이 암묵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대학생 계층뿐만 아니라 새로 변경한 계층인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으로도 재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계층으로 입주한 후 신혼부부 계층의 											

관련항목	유의사항
	<p>자격을 갖추어 계층 변경절차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재계약이 암묵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청년 계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계층으로도 재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 재계약 기준[공공임대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학소재지, 소득 근거지,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계층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대학생계층의 대학생이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주택공급신청자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단, 자동차 및 주택을 소유하거나, 자산기준 초과 시 즉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공공임대주택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청년 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중일 것”, “혼인기간 7년 이내”, 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 : 거주 중 소득, 자산기준, 무주택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 자산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준용 * 임대차 기간 동안 전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미운행)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 거주 중 무주택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기간 동안 전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미운행)

관련항목	유의사항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역세권임대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11.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및 주택을 소유하거나, 자산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심사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마감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아래 제출처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아래 제출처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제출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 : 서울주택도시공사 은평서대문종로센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롯데자산개발(주) </div>

관련항목	유의사항
변경사항 통보 및 계약금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미통보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제출처에서 신청가능)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함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제출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 : 서울주택도시공사 은평서대문종로센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롯데자산개발(주) </div>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은 당첨된 날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아울러 청약 시 기재하지 못한 태아, 자녀수는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제외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더라도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선수관리비(50만원)를 납부 할 수도 있으며, 이는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중도 퇴거시 위약금,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거절 될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만 해당 • 입주민 중 범죄행위를 비롯해 타입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의 행위 적발 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입주지정종료일 이내 입주 및 입주 시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재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상기 3가지 유형(30%, 35%, 40%)에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에 따라 상이, 1년 또는 2년) • 입주 시 잔금 및 선수관리비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펌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입주민의 주거급여 임차료 분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신청하지 않은 주거급여수급자도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납부해야하는 임차료에서 본인의 주거급여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납부 금액이 없을 수 있음) -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주거급여는 보장기관에서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단지 유의사항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환경

- 사업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총정로역(경기대입구)역에서 도보 335m, 2호선 총정로역(경기대입구역)에서 도보 265m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하철 2,5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광화문, 을지로, 홍대 및 신촌 등 시내 중심지를 대중교통으로 20분 이내 이동 가능합니다.
- 백화점(롯데/신세계 본점), 마트, 아울렛(서울역점) 및 대형병원(강북 삼성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하여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 덕수궁, 남산, 서울역 고가공원 등 이동이 양호하여 주거의 쾌적성이 높습니다.

□ 주택 환경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원석디앤씨에서 시행하고 롯데자산개발(주)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자동차 이용 문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를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1면~2면)를 나눔카(카셰어링)사업에

제공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는 모든 계층 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 라 함)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거나, 자동차 운행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 사용)와 생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는 예외임)
- 주차대수는 총 253대(기계식: 84대, 자주식:169대, (장애인): 12대, 나눔카: 25대 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2층 주차램프를 통해 출입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변경)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외관, 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해지될 수 있습니다.
- 동·호수에 따라 전자팸플릿의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 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세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 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주, 부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통행도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장내 경보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과 연결된 통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혹한기 시설물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해 겨울철 공용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1층에 쓰레기보관소(재활용품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및 해충, 소음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와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상 필요시 추가배치 가능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음식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빨래건조 등)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101동 2대(각20인승), 102동 4대(각20인승) 총 6대며 장애인겸용, 화물용, 비상용 겸용 엘리베이터입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 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설비는 지붕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277매, 114.955KW).
- 102동 15호라인(16타입, 3~25층)은 엘리베이터와 접해있어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 및 공작물(광고탑, 통신안테나 등)의 설치를 금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정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이므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세대별 입주 청소는 운영사가 일괄 진행하고 세대 입주자 퇴거 시 청소를 정산해야 합니다. 단, 이후 입주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직접 청소를 할 수 있으며 퇴거 시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 부대시설 환경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하2층에 관리사무소, 주차장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상1층에 우편물 수취함, 재활용품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상2층에 커뮤니티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2. 임대신청 문의

■ 청약관련 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12:00~13:00)
- 내방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청신호주택부 9:00~18:00(단, 점심시간 12:00~13:00)

■ 당첨 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서울주택도시공사 게시판, ARS(1600-3456)

※ 유선(전화)확인으 착오가 있을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 확인요망

13. 임대주택 위치안내

- 금회 공급단지는 현장 여건 등에 의해 견본주택을 미운영합니다.
- 다만, 현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금회 공급되는 모든 단지에 대하여 전자팸플릿을 공개하오니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정보 “ 클릭 후 메뉴상 ’ 전자팸플릿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현장 주변여건을 확인하여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어바니엘 워드 더 스타일 총정로
위 치	서대문구 총정로3가 72-1
교통편	5호선 총정로역(경기대입구) 8번 출구에서 도보5분(335m) 2호선 총정로역(경기대입구) 1번 출구에서 도보 4분(265m)
약도	

2019. 8.29

민간임대사업자 (주)원석디앤씨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